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50 발의연월일: 2020. 11. 26.

발 의 자:백혜련·김남국·김용민

김종민 • 박범계 • 박주민

소병철 · 송기헌 · 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또는 보호집행의 금지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전단 중 "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"를 "사건에 대하여 불송치[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이 없었던 경우(재수사요청이 있었으나 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요구가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)로서 해당 기간만료일까지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로 한정한다] 또는 불기소를 하거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11조(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) 제11조(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)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 (1) -----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 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 ----- 사건에 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 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하여 불송치[「형사소송법」 제 때까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6 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 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이내에 같은 법 제245조의8에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따른 재수사요청이 없었던 경우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・ (재수사요청이 있었으나 그 재 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 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일 이내에 사건송치요구가 없었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 던 경우를 포함한다)로서 해당 를 하여야 한다. 기간 만료일까지 같은 법 제245 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었 던 경우로 한정한다] 또는 불기 소를 하거<u>나</u> -----② ~ ⑤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생 략)